

영등포구의회
제15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12. 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11. 17.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할인율조정 등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27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규정을 개정함**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을 20% → 30%로 상향 조정 (안 별표 1 비고 제12호)
 -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 발행 가능 (안 별표 1 비고 제17호)

■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6조·제14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8조·제25조의2
-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 추진 협조공문
 - 서울특별시 주차장 조례 여행주차장 설치 적용기준 세부내용 통보(서울특별시 주차계획담당관-9290, 2009. 6. 12)
 -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자동차 노상 주차장 정기권 발행 지침 통보(서울특별시 주차계획담당관-11494, 2009. 7. 21)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독촉)(서울특별시 주차계획담당관-12404, 2009. 8. 5)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관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요청(서울특별시 기후변화담당관-3690, 2009. 11. 2)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중구, 은평구, 강동구, 동작구, 강북구 등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9년 3월 18일 개인택시 등 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30% 감면, 5월 28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후 서울특별시가 이와 같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전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부칙에 [별표 1]의 비고 제12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할인 규정의 개정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12. 3.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 주차장법(법률 제9341호, 2009.1.7, 일부개정)

제6조 (주차장설비기준등) ①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②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③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전문개정 1995.12.29]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5.12.29, 1999.2.8, 2003.7.29>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9. 7. 30. 일부개정)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개정 2009.04.22)

제25조의2(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등) (본조신설 2009.05.28)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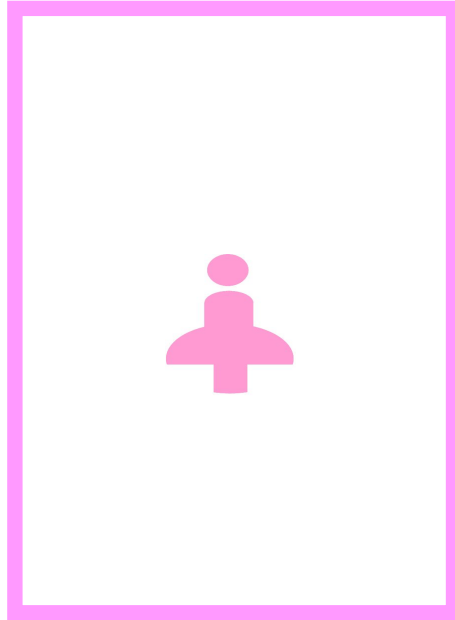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도 제3호 서식〉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이상×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5m이상×세로 5.1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시 : 가로 75cm × 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